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134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7 선고 2018가단778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이동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변론 종결2021. 11. 11.

판결 선고2021. 12. 23.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7. 선고 2018가단778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10. 24. 접수 제127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3줄의 '2017. 6. 기준으로'를 '자동차세가 2017. 6. 기준으로'로 고침

○ 8쪽 8줄부터 같은 쪽 1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그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이에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어떠한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주장이 아니다(더욱이 무효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이혼조정은 그 이후인 2020. 4. 8.에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C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이와 같다면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4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나. 판단

부부 사이의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취지 참조).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5, 6호증,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8. 23.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3.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8. 4. 17.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으며, 2018. 4. 20.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와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는 후 2년이나 경과한 2019. 10. 14.에야 이 사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더욱이 위 2019. 10. 14.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날 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보아도 약 1년 6개월이 지난 때이다.

5)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려면, 피고와 C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이혼조정을 신청한 날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의사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이혼조정 신청이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6) 물론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이후 피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가 C로부터 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김천수

판사안성민

별지